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증권거래 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
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3인

【검 사】박경호외 2인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최정진외 18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17,20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,0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 치하다.

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252일을 피고인 1에 대한, 181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의 점, 2007. 2. 22.자, 2007. 3. 9.자, 2007. 4. 9.자 각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의 점, 피 고인 2, 피고인 3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, 피고인 4에 대한 각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 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